

풍수해보험이란?



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
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

☑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,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% 이상을 지원합니다.

- (주택): 일반 70%, 차상위계층 77.5%,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.04% ~
- (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·공장): 70%

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%까지 지원합니다.

☑ 2022년부터
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.

풍수해보험금을
보상받은 이력이
있는 주택

풍수해 피해로
재난지원금을
지원받은 이력이
있는 주택

재해취약지역의
풍수해보험
가입촉진 계획
대상인 주택

저소득층이
실제 거주하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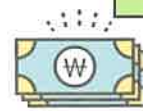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
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.

*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(풍수해보험 상품 II)에 해당하며,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.

대상 재해



연간 보험료 & 보험금 예시



주택·온실·소상공인의
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안정 기여!

주택(80㎡ 기준, 90% 보장) (단위: 원)

| 구분 | 연간보험료 | 보험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소유자 | 총액 | 50,100 |
| | 정부지원 | 35,100 |
| | 자부담 | 15,000 |
| 소유자 (기초생활수급자· 재해취약지역) | 총액 | 50,100 |
| | 정부지원 | 43,600 |
| | 자부담 | 6,500 |

7천 2백만원

온실(철재파이프(A형) 하우스 90% 보장, 1천㎡ 기준) (단위: 원)

| 구분 | 연간보험료 | 보험금 |
|-----|-------|---------|
| 소유자 | 총액 | 258,900 |
| | 정부지원 | 181,300 |
| | 자부담 | 77,600 |

868만원

상가 (단위: 원)

| 구분 | 연간보험료 | 보험금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소유자 | 총액 | 129,200 |
| | 정부지원 | 90,400 |
| | 자부담 | 38,800 |
| 임차인 (재고자산) | 총액 | 71,200 |
| | 정부지원 | 49,800 |
| | 자부담 | 21,400 |

5천만원

공장 (단위: 원)

| 구분 | 연간보험료 | 보험금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소유자 | 총액 | 162,900 |
| | 정부지원 | 114,000 |
| | 자부담 | 48,900 |
| 임차인 (재고자산) | 총액 | 56,700 |
| | 정부지원 | 39,600 |
| | 자부담 | 17,100 |

1억 5천만원

*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,
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의 추가지원 가능합니다.

보상기준 & 상품안내



태풍이 와도, 지진이 나도
걱정 마세요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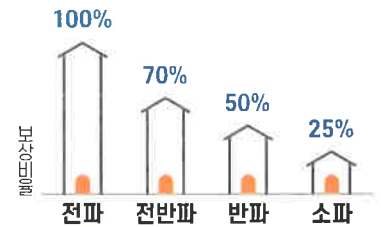
상품안내

| 상품명 | 가입대상 | 가입방법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주택·온실 풍수해보험 (I) | 주택·온실 | 개별·단체 |
|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(II) | 주택 | 단체 |
| 실손·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(III) | 주택 | 개별·단체 |
|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(VI) | 상가·공장 | 개별·단체 |

정액보상

주택·온실
풍수해보험 (I)
단체가입 주택
풍수해보험 (II)

보상기준



*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

실손보상

실손·비례보상
주택풍수해보험 (III)

실손보상 소상공인
풍수해보험 (VI)

보상기준

보험가입금액 범위내
실제 손해액



*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손해액 지급